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부두완 의원 외 18인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이 조례에서는 서울시 잡종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고,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40에서 10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단체 등이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고 1000분의 50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 종교활동은 현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며, 실제 여타 분야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금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시민의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이를 매개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해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서울시 잡종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대부료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3조 제1항 신설)

4. 검토요지

- 안 제23조 제12항(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신설
 -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때 그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만,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 농경지일 경우 실경작자에게 1000분의 10 이상까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 이에 따라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도 특수한 경우로 인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제23조 제12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재 종교시설이 사용하는 시유지 점유현황은 총 6건에 약 1,881m²인데 불교사찰이 1건, 교회가 5건으로서 부과된 면상금은 총 3억 827만원이며,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충정사는 납부하여야 할 면상금 2억 8,991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기타 2개 시유지는 면상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현행 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0분의 25 이상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한국체육대학교 등 5개 학교법인이고 대부면적은 총 15,733m², 2003년 대부료는 8,737만 3천 원으로 나타났음.
 - 그러므로 조례개정안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경우 법령위반사항은 아니나,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법인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대부료를 감면요구 할 것이 예상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산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한봉수 의원 외 4인

2. 제안이유

- 1988년 5월 1일 서초구가 자치단체로 분구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 중 현재까지 미이관된 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이관을 청원함.

3. 주요내용

가. 서초구청 청사부지 이관요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1376-3 소재 서초구청사 부지는 현재 서울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1988.1.1 신설된 5개구(서초, 송파, 노원, 양천, 중랑) 중 노원, 양천,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청사부지를 매입, 구유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송파구 청사부지는 체비지로써 최근 서울시에 의해 무상이관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에도 서초구청사 부지만 잡종재산이라 하여 서초구에 무상양여 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1978.11. 3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 후 1988.9.7 서울시 관재과에서 서초구 청사부지로 확정 통보하고 당시 서울시 예산으로 구청사를 건립,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조의 취지 및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무상양여를 요청하며,

나. 서초어린이집 부지 및 200m² 미만 잡종재산 이관

- 공공용 시설인 서초어린이집(방배동 1027-6, 대지 595.9m²)과 200m² 미만 잡종재산 등 총 16필지 1,809.8m²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관재 2400-1440, 87.6.10)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서초구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요청함.

다.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이관

- 서울시 도관 58421-1905(2003.8.1)호에 의거 체비지 무상이관 검토를 위하여 공공시설점유 체비지현황 보고(서초구 도정 58421-2348, 2003.8.22. 수신 : 서울시 도시관리과장)된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서초구 관내 체비지에 위치한 각 동사무소(방배2동, 반포2,3,4동) 및 반포1동 어린이집(반포동 703-1), 서초여성회관(방배3동 1023-10), 서초배수펌프장(서초동 1313-18)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된 체비지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신속한 무상이관을 요청하고,

라. 도로폭 20m미만 도로 이관

- 서초구가 자치구로 승격이후 수차에 걸쳐 20m 미만 도로를 이관받은 바 있으나 현재 20m 미만 도로로서 서초구에 이관되어야 할 도로 401필지 554,371.1m²를 이관 요청(서초구 건관 58150-2041, '03.5.13, 건관 58150-2957, '03.7.2 등 8회 요청, 수신 : 서울시 건설행정과장)한 바 있으나, 3필지(6,795.4m²)가 반려되어 398필지 547,575.7m²가 현재까지 미이관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조속히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